

202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세입예산

■ 202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6억 3천 3백만원) 대비 1.7%(1천 1백만원) 감액된 6억 2천 2백만원 수준임.

※ 2020년도 최종예산 6억 3천 1백만원 대비 1.4% 감액(9백만원)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633,350	631,467	622,370	△10,980	△9,097	△1.7	△1.4
세외수입	20,186	18,303	6,916	△13,270	△11,387	△65.7	△62.2
경상적세외수입	6,922	5,039	563	△6,359	△4,476	△91.8	△88.8
재산임대수입	6,423	4,540	0	△6,423	△4,540	△100.0	△100.0
공유재산임대료	6,423	4,540	0	△6,423	△4,540	△100.0	△100.0
이자수입	499	499	563	64	64	12.8	12.8
기타이자수입	499	499	563	64	64	12.8	12.8
임시적세외수입	13,264	13,264	6,353	△6,911	△6,911	△52.1	△52.1
보조금반환수입	13,264	13,264	6,353	△6,911	△6,911	△52.1	△52.1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13,264	13,264	6,353	△6,911	△6,911	△52.1	△52.1
보조금	613,164	613,164	615,454	2,290	2,290	0.4	0.4
국고보조금등	613,164	613,164	615,454	2,290	2,290	0.4	0.4
국고보조금등	613,164	613,164	615,454	2,290	2,290	0.4	0.4
국고보조금등	613,164	613,164	615,454	2,290	2,290	0.4	0.4

2. 세출예산

■ 비상기획관 소관 2021년 세출예산은 30억 1천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73억 3백만원) 대비 58.8%(42억 9천 3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을 반영한 최종예산 69억 5천 4백만원 대비 56.7%(39억 4천 4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7,303,497	6,954,072	3,010,219	△4,293,278	△3,943,853	△58.8	△56.7	
행정관리	소 계	7,303,497	6,954,072	3,010,219	△4,293,278	△3,943,853	△58.8	△56.7
	행정운영 경비	157,731	157,731	147,716	△10,015	△10,015	△6.3	△6.3
	재무활동	0	9,496	0	0	△9,496	0.0	△100.0
	사업비	7,145,766	6,786,845	2,862,503	△4,283,263	△3,924,342	△59.9	△57.8
교 부 금	0	0	0	0	0	0	0	

○ 2021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0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0 예산		2021 예산	2020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7,303,497	6,954,072	3,010,219	△4,293,278	△3,943,853	△58.8%	△56.7%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7,145,766	6,786,845	2,862,503	△4,283,263	△3,924,342	△59.9%	△57.8%
내실있는 비상대비연습	720,453	703,194	174,174	△546,279	△529,020	△75.8%	△75.2%
을지연습준비 및 실시	233,244	227,608	102,350	△130,894	△125,258	△56.1%	△55.0%
서울안전통합센터 총무시설 유지관리	487,209	475,586	71,824	△415,385	△403,762	△85.3%	△84.9%
실효성 있는 동원자원관리	31,255	31,255	6,805	△24,450	△24,450	△78.2%	△78.2%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1,255	31,255	6,805	△24,450	△24,450	△78.2%	△78.2%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814,590	637,100	508,240	△306,350	△128,860	△37.6%	△20.2%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123,480	73,480	80,240	△43,240	6,760	△35.0%	9.2%
예비군 육성·지원	350,000	350,000	350,000	0	0	0.0%	0.0%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63,200	52,710	18,000	△45,200	△34,710	△71.5%	△65.9%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277,910	145,910	60,000	△217,910	△85,910	△78.4%	△58.9%
서울수복기념관사전공모전등개최	0	15,000	0	0	△15,000	0	△100%
사회복무요원관리	682,087	600,223	592,649	△89,438	△7,574	△13.1%	△1.3%
사회복무요원 관리	682,087	600,223	592,649	△89,438	△7,574	△13.1%	△1.3%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4,256,573	4,206,373	891,922	△3,364,651	△3,314,451	△79.0%	△78.8%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0	0	0	0	0	0	0
민방위교육운영비	625,005	625,005	610,195	△14,810	△14,810	△2.4%	△2.4%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0,875	30,875	30,875	0	0	0.0%	0.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88,962	168,962	91,343	△97,619	△77,619	△51.7%	△45.9%
민방위교육장 운영	161,731	131,531	159,509	△2,222	27,978	△1.4%	21.3%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50,000	50,000	0	△50,000	△50,000	△100%	△100%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	3,200,000	3,200,000	0	△3,200,000	△3,200,000	△100%	△100%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640,808	608,700	688,713	47,905	80,013	7.5%	13.1%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33,383	1,275	14,130	△19,253	12,855	△57.7%	1008.2%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607,425	607,425	674,583	67,158	67,158	11.1%	11.1%
행정운영경비	157,731	167,227	147,716	△10,015	△19,511	△6.3%	△11.7%
기본경비	157,731	157,731	147,716	△10,015	△10,015	△6.3%	△6.3%
재무활동	0	9,496	0	0	△9,496	0	△100%
보존지출(반환금 및 기타)	0	9,496	0	0	△9,496	0	△100%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202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6억 3천 3백만원) 대비 1.7%(1천 1백만원) 감액된 6억 2천 2백만원 수준임.

※ 2020년도 최종예산 6억 3천 1백만원 대비 1.4% 감액(9백만원)된 수준임.

세외수입

○ 202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2천만원) 대비 65.7%(1천 3백만원) 감액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최종예산 1천 8백만원 대비 62.2%(1천 1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전년 당초 세입예산 대비 주요 감액(△1천 3백만원, △65.7%) 세입과목은 '공유재산임대료'(전년(6백 4십만원) 대비 전액 감액)와 '시·도비 반환금 수입'(6백 9십만원, △52.1%)임.

■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성북구 소재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25.2㎡) 임대료 수입으로, 2020년에는 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1년(3월) 부터 매점운영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전액 감액하였음.

- 한편,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6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50% 인하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비상기획관은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을 29.3%(188만원) 감액 조정한 바 있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율	
	예 산		추경예산	증 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당초
재산임대수입	6,423	6,423	4,540	△1,883	△1,883	△29.3	△29.3
공유재산임대료	6,423	6,423	4,540	△1,883	△1,883	△29.3	△29.3

- 다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민방위 교육장을 운영하지 못하여 구내매점 임차인으로부터 잔여 임대료수입(454만원)을 징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및 2020년 전망액〉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결산전망	
3,063	3,063	3,359	6,066	6,066	6,066	4,540	0	0

- 또한 구내매점 임차인이 비상기획관의 매점운영 종료 결정에도 불구하고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2021년에도 매점을 지속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 2020.10.8.)을 보면, 각 재산관리부서는 예산범위, 피해정도, 지원필요성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세입감소분(감면)과 세출증가분(환급, 출연금 등)에 대한 예산 반영 원칙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세입은 결손처리, 세출은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방침을 정한바,
- 미수납 임대료 감경에 대한 검토와 임대 연장 또는 손실 보전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비상기획관의 면밀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비상기획관 소관 임대시설 운영 현황〉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376
- 임대규모
 - 건물 : 25.2㎡ (전용 24㎡ + 공용 1.2㎡)
 - 토지 : 90㎡ (전용 24㎡ + 공용 66㎡)
- 용 도 : 매점 (민방위대원 편의시설 제공)
- 사용기간 : '20. 3. 2. ~ '21. 3. 1.(※ 임대기간 : 3년, '18.3.2~20.3.1)

-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발생 현황 -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3,084	3,085	3,063	3,063	3,359	6,066	6,066	6,066

※ 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기간 종료('21.3.1.) 후 민방위 교육·연구 센터로 활용 예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시·도비 반환금수입)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자치구에 지급한 2020년도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세입금으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민방위 실습 여건 개선”,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 보조금 사업 집행액에 최근 2년간 반환률(0.85%)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액(1,326만 4백만원) 대비 52.1%(691만원) 감액된 6백만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시·도비 반환금수입 및 2020년 전망액〉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전망	
10,369	19,706	18,350	16,407	17,332	10,365	13,264	4,977	6,353
(결산률)	190.0	89.4		59.8		35.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항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4 시·도비 반환금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 보조금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 ‘시·도비 반환금 수입’의 경우 2020년에는 35.9%에 그치는 결산률이 전망 되는 등 보조금 교부 후 주기적 사후관리를 통한 통계에 기초한 적정 세입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근본적으로는 보조금 교부 당시부터 정확한 보조금 규모 파악을 통한 시비 보조금 집행으로, 불필요한 반환금 발생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수입은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용도가 지정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는 자금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보조 받을 국고보조금 가내시(교부확정통지) 기준으로 전년 당초 예산(6억 1천 3백만원) 대비 0.4%(229만원) 증액된 6억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2020년 예산은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이 같음.

예산과목	예산액			세입내용
	2020 예산	2021예산(안)	증 감	
보조금	613,164	615,454	2,290	
국고보조금 등	613,164	615,454	2,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교육훈련-민방위교육운영비 289,858 ○ 민방위대교육훈련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4,250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311,34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1.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등의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은 ‘민방위교육운영비(2억 9천만원)’,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1천 4백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3억 1천 1백만원)’ 등 3개의 국고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2021년 비상기획관 세입예산의 98.9%(6억 1천 5백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사무인 비상기획관 세출예산 편성액(30억 1천만원)의 20.4%(6억 1,545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비상기획관은 16개 세부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하여만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

〈 비상기획관 2021년 세출예산 사업〉

연번	사업명	근거법령	국비(천원)
1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2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국가전쟁지도지침	
3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21년 없음 (‘20년도 23,100)
4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통합방위법	
5	예비군 육성 지원	예비군법	
6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국가보훈법	
7	시민안보의식 함양	재향군인회법	
8	사회복무요원 관리	병역법	
9	민방위대교육훈련-민방위교육운영비	민방위기본법	289,858
10	민방위대교육훈련-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기본법	14,250
11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민방위기본법	
12	민방위 교육장 운영	민방위기본법	
13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14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	민방위기본법	
15	민방위 장비 보급 확충	민방위기본법	
16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민방위기본법	311,346

- 이처럼 국가사무 수행에 대한 국고 보조 규모가 20.4%(6억 1,545만원)에 그치는 것은,
 -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비상기획관의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한 사업 추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비상기획관 소관 사무 중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에 대해서만 기준보조율 30%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 이처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사업비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사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 세출예산 검토

- 비상기획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73억 3백만원) 대비 58.8%(42억 9천 3백만원) 감액한 30억 1천만원 수준임.
- ※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대비 56.7%(39억 4천 4백만원) 감액한 수준임.
- 전년 예산 대비 증액 및 신규 사업은 없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서울안전 통합센터 총무시설 유지관리”(△4억 1천 5백만원, △85.3%)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8천 9백만원, △13.1%)사업 등이고, 폐지사업은 “서울수복기념관사전 공모전 등 개최”(△1천 5백만원, △100%),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5천만원, △100%),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32억원, △100%) 사업임.

가.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 본 사업은 전쟁이전 국가위기관리 연습을 통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2억 3천 3백만원) 대비 56.1%(1억 3천 1백만원) 감액한 1억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 2020년도 최종예산(2억 2천 8백만원) 대비 55.0%(1억 2천 5백만원) 감액한 수준임.

□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233,244	(x-) 227,608	(x-) 102,350	(x-) △125,258	(x-) △55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x-) 7,250	(x-) 7,250	(x-) 7,373	(x-) 123	(x-) 2
사무관리비	(x-) 154,331	(x-) 154,331	(x-) 33,044	(x-) △121,287	(x-) △79
공공운영비	(x-) 46,763	(x-) 41,127	(x-) 36,983	(x-) △4,144	(x-) △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3,300	(x-) 3,300	(x-) 3,350	(x-) 50	(x-) 2
특정업무경비	(x-) 21,600	(x-) 21,600	(x-) 21,600	(x-) 0	(x-) 0

- 기존 을지연습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방침¹⁾에 따라 이후 을지태극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이후 일정이 축소되거나 유예·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

〈최근 3년간 을지태극연습 예산 집행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예 산	편 성 액	227,608	293,873	291,834
	집 행 액	99,817(예상)	227,835	76,622
	집행잔액	127,791(예상)	66,038	215,212
	불용률	56.1%(예상)	22.5%	73.7%
불용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비상대비태세 점검·훈련으로 조정	전시대비 훈련기간 축소 (2박3일→1박2일)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을지연습 유예(미실시)

※ 2020년 10월 말 현재 본 사업 예산(2억 2천 8백만원) 대비 집행률은 36.1%(8천 2백만원)임.

- 금번 예산편성 주요 감액 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을지태극연습 급량비를 대폭 감액 편성한 데 따른 것으로, 전년(1억 2천 7백만원) 대비 96.8% (1억2천 2백만원) 감액하여 4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비상기획관은 실제 훈련 시 상황실 근무자에 한하여 급량비를 편성함에 따른 것임.

〈사무관리비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을지태극연습 급량비)	C 을지태극연습 급량비 = 126,808천원	O 을지태극연습 급량비 = 4,000천원
	- 실시부 급량비 8,000원*5,167명*3식 = 124,008천원	
	- 통제부 급량비 8,000원*25명*1식*14일 = 2,800천원	- 통제부 및 상황실 급량비 8,000원*125명*4식 = 4,000천원

※ 2020년 10월 말 현재 을지연습 급량비 예산(1억 2천 7백만원) 전액 미집행 중.

1) 2018년도 을지연습 조정방침 통보,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1420(2018.07.11.))

- 이는, 기존 실시부서(시 부서·사업소)에 지급한 급량비를 해당 실·국·본부 자체 특근매식비로 대체하여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국가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하는 훈련 운영 형태로 볼 때, 각 훈련 참여 부서마다 개별 급량비를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을지태극연습은 국가 위기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훈련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²⁾」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한 법률 규정 사항에 반하는 것인바, 비상기획관은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 본 사업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1억 2천 3백만원) 대비 35.0%(4천 3백만원) 감액한 8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 2020년도 최종예산(7천 3백만원) 대비 9.2%(6.7백만원) 증액한 수준임.

2)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국가정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 “통합방위협의회의 등 운영”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23,480	(x-) 88,480	(x-) 80,240	(x-) △8,240	(x-) △9
사무관리비	(x-) 85,030	(x-) 75,030	(x-) 56,790	(x-) △18,240	(x-) △24
국외업무여비	(x-) 25,000	(x-) 0	(x-) 10,000	(x-) 10,000	(x-) 1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x-) 13,450	(x-) 13,450	(x-) 13,450	(x-) 0	(x-)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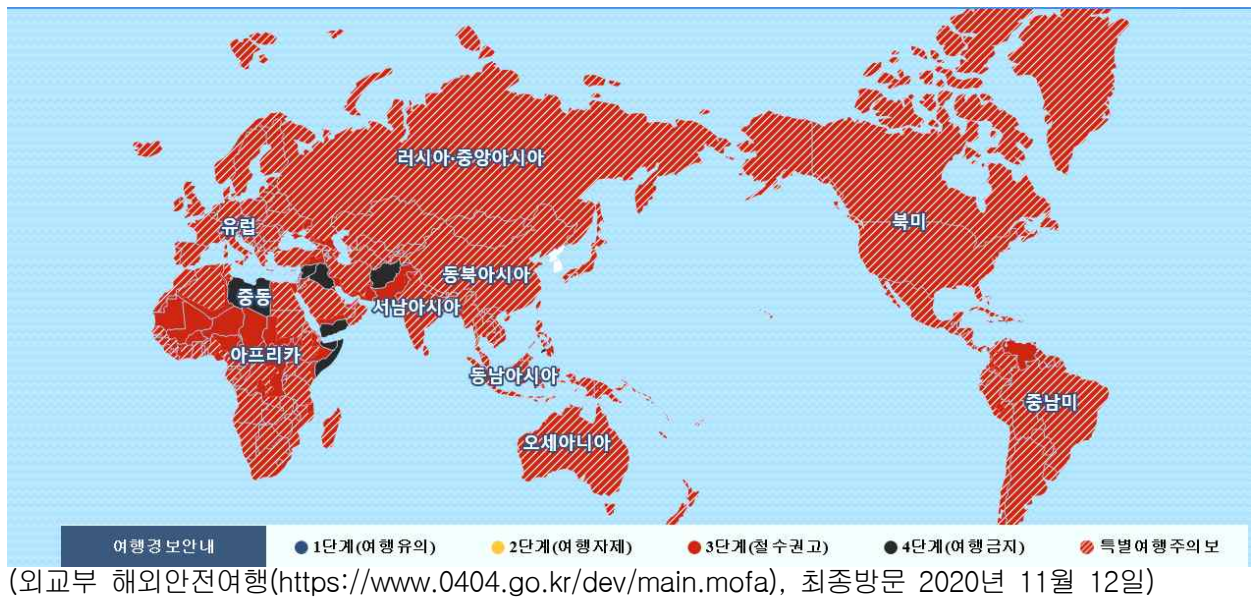
-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정책개발 워크숍(350만원) 미편성, 국외출장여비 축소 및 회의, 행사 등을 축소함에 따른 것임.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 27,630천원	○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 20,090천원
	- 유인물 및 현수막 등 제작 2,070,000원*4회 = 8,280천원	- 유인물 및 현수막 등 제작 2,070,000원*2회 = 4,140천원
	- 회의장 임차료 및 주차료 등 2,300,000원*4회 = 9,200천원	- 회의장 임차료 및 주차료 2,300,000원*2회 = 4,600천원
	- 전시장비 임차료 900,000원*4회 = 3,600천원	- 전시장비 임차료 900,000원*2회 = 1,800천원
	- 유공자 표창장 인쇄 5,500원*100매 = 550천원	- 유공자 표창장 인쇄 5,500원*100매 = 550천원
	- 영상자료 제작 및 인쇄 등 6,000,000원*1회 = 6,000천원	- 영상자료 제작 및 인쇄 등 9,000,000원*1회 = 9,000천원
	○ 안보정책자문회의 운영 = 27,400천원	○ 안보정책자문회의 = 26,700천원
	- 참석수당 150,000원*17명*8회 = 20,400천원	- 참석수당 150,000원*20명*8회 = 24,000천원
	- 사전자료 검토 100,000원*4명*5회 = 2,000천원	- 사전자료검토 100,000원*4명*3회 = 1,200천원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63개국이고, 2021년에도 상당기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외출장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0년 11월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63개국이라고 함. 55개 국가·지역은 입국금지 조치, 10개 국가·지역은 격리 조치, 98개 국가·지역은 검역감화 및 권고 사항 등, 24개 유럽 국가·지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하였음.



- 한편,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안보정책자문단을 두면서 분기 1회 개최(연 4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연 8회 개최하는 것으로 수당 등을 편성하였는바, 자문단 운영에 있어서, 회의결과 검토 등 과도하고 불필요한 회의 소집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과 함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위원회 운영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9. 3. 28., 일부개정 제11조(자문단 구성·운영 등) ① ~ ⑤ (생략)

⑥ 자문단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자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협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자문단이 긴급하게 자문에 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또한, 2020년도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실적을 보면, 2월부터 10월까지 4회 개최하였는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 활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 대면회의를 진행할 만큼 시급한 의결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 운영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자문단 구성·운영 등)
- 위 축 일 : 2019. 3. 8.(임기 2년, 명예직)
- 정기회의 : 격월 1회
- 위원회 구성 : 육·해·공·해병대 예비역 대령이상 등 17명

회의·일시, 회의자료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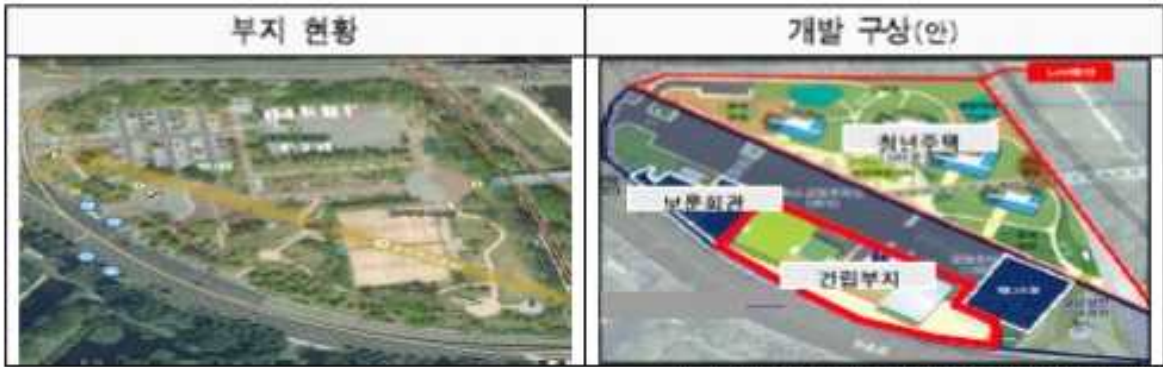
구 분	회의일자	주 요 내 용	비 고
제1차	'20.2.12(금)	· 사스, 메르스 등 과거사례 및 코로나 19 서울시 조치사항 설명 · 코로나 19 관련 대응방안 등 의견 수렴 · '20년 안보정책자문단 운영계획 등	-
제2차	'20.5.29(금)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보와 우리의 할 일 · 코로나 19 관련 민방위대 동원 검토 결과 ·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대비	-
제3차	'20.7.24.(금)	· 시장 유고시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방향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벤트성 선거 전략 전망 및 시사점	-

구 분	회의일자	주 요 내 용	비 고
제4차	'20.10.16.(금)	· '미래 메가시티 대형복합재난' 대처방안 · 통합방위 및 안보의식 고양을 위한 사업 등	-

- 한편,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서울수복 관련 의견 청취 등' 관련 예산 1천만원의 경우,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한 의견 청취 등의 비용으로 보여 지는바, 동 건립 사업은 소요예산이 163억원(시비 134억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립 개요

- 건 립 지 :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326(동작주차근린공원 남측 현충로 인접)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800㎡ ※ 부지면적 3,000㎡



※ 청년주택(500세대) 거립(2022. 1.H)

- 총사업비 : 163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실집행)	2022 (확보액)	2023 (확보액)	2024 (확보액)	2023.이후 (확보액)
계	163	29	7.5	42.7	40	43.8
국 비	-	-	-	-	-	-
시 도 비	134	-	7.5	42.7	40	43.8
시군구비	29	29	-	-	-	-

※ 시비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공사비, 용역비, 기타비용을 시비로 확보

※ 구비 : 기투자액에 토지보상비 29억원(구유지 무상사용 허가로 기투자) 포함

다.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 본 사업은 전후세대에게 6.25전쟁 등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시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전년 당초 예산(2억 7천 8백만원) 대비 78.4%(2억 1천 8백만원) 감액한 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최종예산(1억 4천 6백만원) 대비 58.9%(8천 6백만원) 감액한 수준임.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277,910	(x-) 145,910	(x-) 60,000	(x-) △85,910	(x-) △59
사무관리비	(x-) 7,910	(x-) 7,910	(x-) 0	(x-) △7,910	(x-)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x-) 270,000	(x-) 138,000	(x-) 60,000	(x-) △78,000	(x-) △57

- 2020년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 사업’(791만원)은 한강대교 탄흔 등 사라져가는 6·25 상흔 발굴사업에 대한 수도방위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2021년까지 계획한 사업으로,
 - 유적지마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문안 감수 및 번역료까지 지급을 완료한 상태임에도, 실제 표지판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바, 기 투입된 예산이 의미 없이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 완료의 필요성에 대한 비상기획관의 관심과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6.25전쟁 상흔 발굴 및 지원 = 7,910천원 -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2명*6회 = 1,800천원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판 문안 감수료 30,000원*65개 = 1,950천원 - 표지판 문안 번역(영문)료 64,000원*65개 = 4,160천원 	
	증감사유	
	○ 6.25전쟁 상흔 안내표지판 문안 및 번역 완료	
민간경상사업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 185,000천원 - 버스임대료 500,000원*115대 = 57,500천원 - 이용료, 체험비 등 12,000원*4,600명 = 55,200천원 - 식비(중식,간식)/도서구입비 13,500원*4,600명 = 62,100천원 - 안전요원 인건비 100,000원*102명 = 10,2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 40,000천원 - 버스임대료 500,000원*23대 = 11,500천원 - 이용료, 체험비 등 12,000원*970명 = 11,640천원 - 식비(중식,간식)/도서구입비 13,500원*970명 = 13,095천원 - 안전요원 인건비 100,000원*23명 = 2,300천원 - 기타 행정비 현수막 등 = 1,46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전쟁 기념행사 = 25,000천원 - 행사장 대관료 4,500,000원 = 4,500천원 - 강사료/인건비(사회자, 군악대 등) 6,500,000원 = 6,500천원 - 참전용사 위문품 10,000원*1,000명 = 10,000천원 - 행정비(현수막, 초청장, 생수 등) 4,000,000원 = 4,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전쟁 기념행사 = 18,000천원 - 행사장 대관료 4,300,000원 = 4,300천원 - 강사료/인건비(안보강사, 행사보조요원 등) 930,000원 = 930천원 - 참전용사 위문품 10,000원*1,000명 = 10,000천원 - 행정비(현수막, 초청장, 생수 등) 2,770,000 = 2,77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사랑 안보포럼 = 10,000천원 - 강사료 350,000원*6명*1회 = 2,1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사랑 안보포럼 = 2,000천원 - 강사료 360,000원*1명*2회 = 720천원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 대관료 4,500,000원*1회 = 4,500천원	- 대관료 500,000원*2회 = 1,000천원
	- 기념품 9,000원*250명*1회 = 2,250천원	- 행정비(현수막, 초청장, 생수 등) 280,000원 = 280천원
	- 행정비(현수막, 초청장, 생수 등) 1,150,000원 = 1,150천원	
	○ 여군창설 70주년 기념행사 50,000,000원 = 50,000천원	
	증감사유	
	-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등 안보행사 규모 축소	

- 한편,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자인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 2021년도 ‘나라사랑 안보포럼’은 2백만원(전년 1회 1천만원)의 예산으로 2회의 포럼을 계획하였는바, 의도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 폐지 등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9년 나라사랑 안보포럼 개최 실적 〉

나라사랑 안보포럼(2회)

1 차	2 차
○ 일 시 : 10. 25(금) 14:00~16:30	○ 일 시 : 11.28(목) 15:00~18:00
○ 장 소 : 서경대학교 강당(문예관) (성북구 서경로 124)	○ 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강당 (종로구 연지동)
○ 참여인원 : 370명 (학생 200, 향군회원 170명)	○ 참여인원 : 250명 (학생 50, 향군회원 150명)
○ 주제 : '한반도 안보정세와 우리의 대응' (패널 : 문성록 박사 외 4명)	○ 주제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평가 및 전망' (패널 : 문성록 박사 외 4명)

- 또한 10년째 같은 보조사업자(재향군인회) 선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바, 조례 제·개정을 통한 보조사업자의 다변화 모색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재향군인회 보조사업자 지정 근거 〉

<p>「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p> <p>제5조 (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제6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u>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u>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라.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 본 사업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로서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시 (사업소 포함)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의 관리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6억 8천 2백만원) 대비 13.1%(8천 9백만원) 감액한 5억 9천 3백만원(전액 시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최종예산(6억원) 대비 1.3%(7.5백만원) 감액한 수준임.

□ 사회복지무요원 : 442명 (‘20.9.30. 기준)

재난·안전	환자구호	환경보호·감시	행정기관경비	행정지원
106명	38명	219명	15명	64명

□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682,087	(x-) 600,223	(x-) 592,649	(x-) Δ7,574	(x-) Δ1
사무관리비	(x-) 6,121	(x-) 6,121	(x-) 5,760	(x-) Δ361	(x-) Δ6
공공운영비	(x-) 6,416	(x-) 6,416	(x-) 6,720	(x-) 304	(x-) 5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x-) 900	(x-) 900	(x-) 0	(x-) Δ900	(x-) Δ10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x-) 668,650	(x-) 586,786	(x-) 580,169	(x-) Δ6,617	(x-) Δ1

○ 병역의무자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보상금(봉급, 식비, 교통비 등)등 연 6억원 수준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관리는 대표적인 국가사업이라 할 것인바, 국비 보조를 통하여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사회복무요원 관리 = 6,121천원 - 사회복무요원 수첩 등 교육자료 인쇄 5,000원*300부 = 1,500천원 - 사회복무요원 교육 준비 등 300,000원*12회 = 3,600천원 -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사료 300,000원*1명*1회 = 300천원 -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인쇄 사회복무5,500원*131매 = 721천원	○ 사회복무요원 관리 = 5,760천원 - 사회복무요원 수첩 등 교육자료 인쇄 5,000원*300부 = 1,500천원 - 사회복무요원 교육 준비 등 300,000원*12회 = 3,600천원 -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인쇄 사회복무5,500원*120매 = 660천원
공공운영비	○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료 = 6,416천원 -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료 16,000원*401명 = 6,416천원	○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료 = 6,720천원 -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료 19,200원*350명 = 6,72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사회복무요원 업무추진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1,000,000원*90% = 900천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 668,650천원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 580,169천원
	- 사회복무요원 봉급 488,200원*12월*80명 = 468,672천원	- 사회복무요원 봉급 549,200원*12월*65명 = 428,376천원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40,000원*12월*80명 = 134,400천원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26,000원*12월*65명 = 98,280천원
	-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54,000원*12월*80명 = 51,840천원	-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56,700원*12월*65명 = 44,226천원
	- 사회복무요원 여비 2,700원*2회*80명 = 432천원	- 사회복무요원 여비 2,700원*2회*65명 = 351천원
	-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332,630원*40명 = 13,306천원	-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297,840원*30명 = 8,936천원
	증감사유	
	- 배정인원 감소, '21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기준 변경	

○ 그러나, 2020년 9월 말 현재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442명 중 일반행정 지원요원(64명)에 대한 보상금(사업소 등 특별회계분 미포함)을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바, 국비지원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환자구호·환경 보호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와 같이, 일반행정지원 요원의 보상금 또한 국고보조를 통한 운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시·사업소 사회복무요원 현황>

(단위 : 명)

기 관 명	2018년	2019년	2020년	복무분야
합 계	538	536	442	
소 방 재 난 본 부	114	132	106	재난안전관리
광 암 아 리 수 정 수 센 터	7	5	3	환경보호

기 관 명		2018년	2019년	2020년	부부분야
구 의 아 리 수 정 수 센 터		11	10	8	
뚝 도 아 리 수 정 수 센 터		16	18	17	
영 등 포 아 리 수 정 수 센 터		12	10	9	
암 사 아 리 수 정 수 센 터		18	16	18	
강 북 아 리 수 정 수 센 터		11	12	9	
한 강 사 업 본 부		49	43	40	
동 부 공 원 녹 지 사 업 소		42	43	32	
서 부 공 원 녹 지 사 업 소		53	54	54	
중 부 공 원 녹 지 사 업 소		31	26	23	
어 린 이 병 원		3	3	4	
은 평 병 원		31	39	19	환자구호
서 북 병 원		20	16	15	
중 량 물 재 생 센 터		25	19	15	행정기관경비
본 청	민 방 위 담 당 관	8	7	9	일반행정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	2	2	
	차 량 공 해 저 감 과	-	12	6	환경보호
보 건 환 경 연 구 원		16	15	15	일반행정
한 성 백 제 박 물 관		2	2	2	
서 울 역 사 박 물 관		2	2	2	
서 울 도 서 관		2	2	1	
동 부 도 로 사 업 소		12	10	9	
서 부 도 로 사 업 소		3	2	1	
남 부 도 로 사 업 소		9	5	3	
북 부 도 로 사 업 소		17	9	1	
강 서 도 로 사 업 소		11	9	6	
서 울 시 립 대 학 교		10	13	13	

마.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 본 사업은 「민방위기본법」(제15조(민방위 준비))에 따라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확충하여 민방위 사태 대응 능력 강화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6억 7백만원) 대비 11.1%(6천 7백만원) 증액한 6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280,350) 607,425	(x280,350) 607,425	(x311,346) 674,583	(x30,996) 67,158	(x11) 11
자치단체자본보조	(x280,350) 607,425	(x280,350) 607,425	(x311,346) 674,583	(x30,996) 67,158	(x11) 11

- 서울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목표(665,596개) 대비 확보율은 32.0%(212,894개, 2020.9. 기준)에 그치고 있고, 자치구간 편차는 36.6%(최고 서대문구 61.6%, 최저 구로구 25.0%)에 달하고 있는 등 방독면 수급의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법정 기준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비상기획관의 면밀한 개선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치구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유현황 ('19. 12. 31. 기준)

구 분	목표량 (개)	보유량 (개)	보유율 (%)	비 고 (‘19년 구매량)
합 계	665,596	212,894	32.0	37,813
종 로	8,702	5,253	60.4	297
중 구	8,964	3,998	44.6	300
용 산	15,496	7,484	48.3	797
성 동	21,910	6,923	31.6	818
광 진	26,661	7,636	28.6	1,053
동대문	24,266	7,245	29.9	1,759
중 량	30,611	9,328	30.5	1,272

구 분	목표량 (개)	보유량 (개)	보유율 (%)	비 고 (‘19년 구매량)
성 북	26,646	8,308	31.2	1,253
강 북	21,455	7,112	33.1	1,450
도 봉	21,083	7,076	33.6	1,750
노 원	31,037	8,470	27.3	2,157
은 평	32,394	9,962	30.8	2,157
서대문	19,005	11,700	61.6	695
마 포	26,055	8,333	32.0	1,453
양 천	26,869	10,587	39.4	1,080
강 서	46,421	12,585	27.1	3,233
구 로	29,508	7,389	25.0	1,272
금 천	18,624	6,374	34.2	900
영등포	27,572	7,488	27.2	1,323
동 작	28,036	7,154	25.5	1,397
관 약	44,180	12,511	28.3	3,206
서 초	25,270	7,801	30.9	2,055
강 남	31,713	10,249	32.3	2,247
송 파	43,917	13,056	29.7	1,889
강 동	29,201	8,872	30.4	2,000

「민방위 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② (이하 생략)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민방위 물자·시설 등)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축하거나 설치·정비하여야 하는 물자·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
2. 화재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

3. 지하 양수시설(揚水施設)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4. 그 밖의 위장(偽裝)시설·물자, 방호시설 등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자·시설 및 장비

바.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 본 사업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사태에서 주민 보호를 위한 방공, 방재, 구조, 군사작전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6종) 확보를 위한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57.7%(1천 9백만원) 감액한 1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최종예산(1백만원) 대비 1,008.2%(1천 3백만원) 증액한 수준임.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정책 자금 수요 증가로 인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장비 구매 보조금 삭감(기 지급 도봉구 외)

□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33,383	(x-) 1,275	(x-) 14,130	(x-) 12,855	(x-) 1,008
자치단체자본보조	(x-) 33,383	(x-) 1,275	(x-) 14,130	(x-) 12,855	(x-) 1,008

- 민방위 사태 대비 필요 장비는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 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의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감액편성 사유는 이미 151.9%(2019년 기준)를 상회하는 보급률에 따라, 시급성이 필요한 자치구에만 우선 구매비를 지급하려는 것임.

〈2019년 자치구별 민방위 장비(6종) 보급 현황〉

(2019. 9월 기준)

구 분	계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소요량	확보량	보급률 (%)	소요량	확보량	소요량	확보량	소요량	확보량	소요량	확보량	소요량	확보량	소요량	확보량
합 계	39,692	60,310	151.9	9,576	11,570	1,826	1,744	6,280	8,118	5,018	6,112	10,678	20,800	6,314	11,966
중로구	1,676	2,980	177.8	357	404	88	87	251	276	221	249	466	1,451	293	513
중 구	2,026	2,915	143.9	410	504	115	97	308	389	283	332	571	968	339	625
용산구	1,441	2,166	150.3	285	366	69	67	204	282	200	226	428	567	255	658
성동구	1,544	1,977	128.0	350	360	73	76	235	278	199	259	412	580	275	424
광진구	1,488	2,755	185.1	330	338	83	66	236	248	197	201	410	1,563	232	339
동대문	1,263	1,387	109.8	272	321	52	53	180	210	162	169	372	384	223	247
중랑구	1,630	2,629	161.3	434	492	75	63	260	435	203	195	420	458	238	986
성북구	1,555	2,072	133.2	366	461	84	72	261	354	200	233	413	465	231	487
강북구	1,318	1,461	110.8	302	344	63	58	209	214	161	143	365	396	218	306
도봉구	1,334	1,543	115.7	309	309	72	66	217	267	177	232	361	334	198	335
노원구	2,285	3,165	138.5	532	727	116	102	369	515	298	494	634	731	336	596
은평구	1,302	1,933	148.5	352	568	52	46	217	297	157	253	335	472	189	297
서대문	1,139	2,020	177.3	305	374	35	32	181	269	126	170	269	401	223	774
마포구	1,247	3,788	303.8	268	413	48	48	166	327	137	220	369	1,993	259	787
양천구	1,377	1,495	108.6	365	393	58	56	227	261	169	169	354	387	204	229
강서구	2,281	2,687	117.8	533	593	115	115	364	401	301	290	620	755	348	533
구로구	1,809	2,003	110.7	454	478	81	82	297	362	228	206	484	486	265	389
금천구	809	1,447	178.9	229	298	28	27	133	242	94	136	203	517	122	227
영등포	1,951	2,518	129.1	481	542	83	79	309	349	250	277	520	697	308	574
동작구	1,107	2,163	195.4	313	394	40	37	182	234	128	162	274	1,078	170	258
관악구	1,168	1,393	119.3	363	439	36	70	196	215	122	117	278	302	173	250
서초구	1,909	2,239	117.3	457	448	81	79	293	362	243	264	525	672	310	414
강남구	2,497	4,177	167.3	617	683	113	80	407	435	317	455	664	2,003	379	521
송파구	2,227	4,813	216.1	557	861	109	109	362	495	282	468	591	1,976	332	904
강동구	1,311	2,587	197.3	341	460	57	77	216	401	163	192	340	1,164	194	293

○ 다만,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라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침의 개정 없이 구성된 민방위 장비(6종)는 고도화된 현대전 양상으로 볼 때 대피시설 피폭으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발전기, 유압기 등) 비치 등 장비의 재구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 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의 6개로 구성

○ 한편,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23조에서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률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를 규정하면서, 비상기획관 사업 중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에 대하여 기준보조율로 30%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또한 국고보조금 지원 없이 전액 시비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비상기획관의 국비 확보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 1 >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 업	기 준 보 조 율 (%)	비 고
1. 일반여권 발급	100	
2. 119구조장비 확충	50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30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이하 생략)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최석훈